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자

- 서울특별시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2003.1.10) 및 동조례시행규칙(2003.1.15)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조례의 관련규정을 이에 맞도록 부서명칭, 직명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
-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
- 서울시민대상조례
-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 서울특별시공인조례
-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3. 주요골자

가. 변경된 부서명칭과 직명정비

- 기획예산실→경영기획실, 시정기획관→정책기획관, 행정관리국장→행정국장, 건설안전관리본부→건설안전본부 등

나. 개정된 사무분장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 물품관리조례의 경우
 - 회계과장 → 총무과장
- 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경우
 - 행정(2)부시장 → 행정(1)부시장
 -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 총무과장
- 공인조례의 경우
 - 총무과 → 민원과

4. 검토요지

- 지난 2003. 1. 10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관련 부서명칭, 직명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음.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신청사건립기금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각호외의규정중 “행정(2)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하고, 동항 제1호중 “기획예산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시정기획관”을 “정책기획